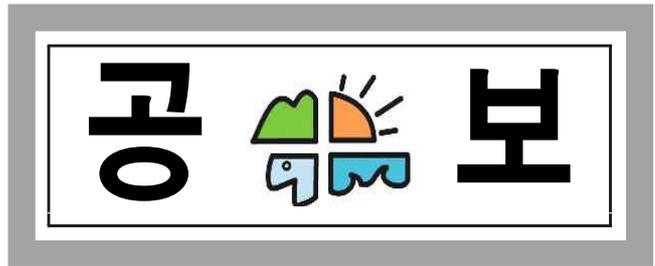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955호 2015년 9월 18일(금)

조 례

- 속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2

규 칙

- 속초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규칙 4

고 시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11

공 고

-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8
- 속초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7
- 속초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2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49

회 람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415, FAX : 639-2106)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9월 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 2420호

속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
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을, 그리고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의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 위촉된 위원 등의 임기는 임기만료일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개정이유

주민자치위원 구성, 위원장 궐위 시 운영 등 문제점을 보완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현행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를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및 사업 계획 등 회기와 맞추어 내실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속초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9월 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규칙 제 1338호

속초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일반음식점, 나목의 휴게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두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영업
3.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는 영업

4.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식품접객업영업을하는 경우
5.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래시장에서 음식점을 하는 영업
6.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을 하는 영업
7.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하는 영업
8. 건설공사현장에서 음식점을 제공하는 영업
9.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
10.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하는 영업
1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 또는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하는 영업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5조(영업자의 책무) 옥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 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여야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제외)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제외하고, 영업으로 인한 법 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업종별 시설기준(제4조 관련)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 1)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 2)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3)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가)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내벽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라) 가), 나), 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4)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5)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

하여야 한다.

라. 급수시설

-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마. 화장실

- 1) 화장실은 작업장 및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4)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검사실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1. 사)에 따른다.

아.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건물의 위치 등

-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 2)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자재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가. 건물의 위치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나. 작업장

- 1)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 등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 2) 제조·가공실의 시설 등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나. 작업장의 관

련규정을 준용한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식품취급시설 등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다. 식품취급시설 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라. 급수시설

급수시설은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라. 급수시설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화장실

- 1) 화장실은 작업장 및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4)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식품소분·판매업 시설기준

가. 작업장 또는 판매장

- 1)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판매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 2) 식품소분업의 소분실은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나.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3) 식품등을 소분·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화장실

- 1) 화장실은 작업장 및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4)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식품접객업 시설기준

가. 영업장

-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 2)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 2)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 4)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5)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음식 등으로 인하여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급수시설

-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라. 화장실

- 1) 화장실은 작업장 및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4)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기타

- 1) 나. 6)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 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식품위생과 관련된 시설을 제외하고 4.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이외의 시설을 설치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 1)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 면적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옥외 시설에서 조리 시설 설치 및 조리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 3)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 4) 상기 규정된 시설물 이외의 어떤 시설도 추가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옥외영업장 시설물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개정이유

가. 식품위생업소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 등에 관한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덜어 주고,

나. 영업장의 옥외에서 영업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관광특구지역인 속초시만의 영업특례를 마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데 있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주택법 제1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5일

속 초 시 장

1. 사업명칭 : 속초시 청호동 현대산업개발(주) 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 명칭 및 대표자 : 현대산업개발(주) 대표이사 김재식, 정몽규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3. 사업위치 : 속초시 청호동 433-3번지 일대

4. 사업개요

사업종류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분양주택	○ 사업면적 : 34,988.20㎡ ○ 대지면적 : 30,245.20㎡ ○ 건축연면적 : 103,502.11㎡ ○ 건설규모 : 아파트 2/29층 6개동 687세대 외 부대·복리 시설	191,027,995천원	

5. 사업시행기간 : 2015. 10. ~ 2018. 01.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결정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붙임1>

7. 관계서류는 속초시청 건축디자인과(☎033-639-247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하게 합니다.

[붙임1]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①	청호동 433-3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속초시 청호동 433-3번지 일원	34,926	증)104.2	35,030.2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번호	위 치	면적(㎡)	결 정 (변 경) 사유
변경	①	속초시 청호동 433-3번지 일원	35,030.2	• 지적 불부합 조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 계 및 면적 변경

②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문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m ²)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34,926	증)104.2	35,030.2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4,926	증)104.2	35,030.2	100.0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m ²)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속초시 청호동 433-3번지 일원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35,030.2	• 지적 불부합 조정에 따른 면적 변경

나.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변경없음)

■ 도로

■ 도로 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합계	4	742	3,258	1	193	640	2	363	2,104	1	186	514
중로	1	186	514	-	-	-	-	-	-	1	186	514
소로	3	556	2,744	1	193	640	2	363	2,104	-	-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2	12~15 (15)	보조간선 도로	1,299 (186)	조양 1423도	청호 793-32 도	일반 도로	청호 초등학 교	74.8.14 (건고 제272호)	-
기정	소로	1	87	10~12	국지도로	193	조양 1436-1 도	조양 1442-22도	일반 도로	-	77.4.19 (강고 제77-72 호)	-
기정	소로	2	94	8~10 (10)	국지도로	671 (184)	조양 1450-2 대	청호 433-6대	일반 도로	-	77.4.19 (강고 제77-72 호)	-
기정	소로	2	222	8~12	국지도로	179	청호 433-8대	청호 432-39도	일반 도로	-	77.4.19 (강고 제77-72 호)	-

(2) 공원시설(변경)

▣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원	어린이공원	청호동433-3번지 일원	1,500	증)27	1,527	2015.6.12 (속고제2015-25호)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시설의 세분	결정내용	결정 사유
①	어린이공원	· 변경 - 면적증가 : 27㎡	· 지적 불부합 조정에 따른 면적 증가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문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5,030.2	-	34,926	증)104.2	35,030.2	-
가구번호와 동일	A1	30,245.2	속초시 청호동 433-3번지 일원	30,181	증)64.2	30,245.2	공동주택용지
	A2	1,527	속초시 청호동 433-2번지 일원	1,500	증)27	1,527	어린이공원
	A3	3,258	속초시 청호동 433-23번지 일원	3,245	증)13	3,258	도로용지

나.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결 정 내 용	비 고	
-	A1	용도	허용	•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공동주택, 제8호의 부대시설 및 제9호의 복리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륜	• 250% 이하		
		높 이	• 30층 이하		
		배 치	• 아파트는 남향배치를 원칙으로 함 • 아파트를 고층탑상형으로 배치하여 오픈스페이스를 확보		
		형 태	• 1개동 정면부 폭을 50m미만 혹은 주동 분절로 계획 • 1~4층의 저층부는 돌 또는 나무재질등을 사용(안정감 유도) • 지붕 및 옥상은 평지붕 형태 가급적 지양, 선형의 변화감이 풍부한 스카이라인 유도 • 답장은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권장		
		색 채	• 속초시 건축물 색채가이드라인 적용 • 대비가 강한 색채 억제하고 중명도, 중채도의 색으로 자연색과 어울리도록 계획 • 지붕색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brown 계열 • off-white계열 또는 화강석 돌재질 사용 부분적으로 청색톤이 가미된 gray 계열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지정	결정도 참 조			

3. 기타사항에 관한 부문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전면공지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전면 공지	폭원 6m	• 도로변으로부터의 소음 완충 및 가로경관 향상을 위해 6m의 조경 설치	

나. 교통처리계획

▣ 보행 및 차량 진출입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보행동선	단지내 보행동선	- 주 보행동선으로부터 보조보행동선 유도
차량동선 및 주차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 진출입 불허
	단지내 차량동선 권장	- 단지내 진입도로와 이면도로로 차량 동선 유도

- 주1) “차량출입불허구간” 이라 함은 대지안으로 차량 출입이 불허되는 구간을 말한다
주2) 주차 출입방향이 표시된 변에서 다음의 구간에서는 차량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 버스정류장, 기타 승하차시설, 횡단보도 전후 10m구간

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지도 : 게재생략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15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유재산 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지방의회 제출 시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법률 제13017호, 2015.1.10. 공포, 7. 21.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나.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초지법이 개정(법률 제13021호, 2015.1.20. 공포, 7. 21. 시행)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다.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각 조항에 대한 조례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 및 통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심의회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을 포함 하여 7명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무상대부, 사용료 감면 등의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4조)
- 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제출시기 명확화 (안 제12조)
 - 현행) 예산의결 전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받아야 함
 - 개정) 회계연도 시작일 기준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 회계연도 중 관리계획 제출 가능
- 다. 「초지법」 일부개정 시행에 따라 사유지 대부료율 등을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안 제29조)
-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수급자 범위 변경 (안 제29조, 안 제38조), 관사의 관리 규정 보완 (안 제50조, 안 제50조2)
- 마. 각 조항에 대한 조례 용어 정비 및 통일 (안 제5조, 안 제8조, 안 제19조, 안 제25조, 안 제26조, 안 제35조, 안 제38조, 안 제49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속초시장(참조 : 회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217-701), 속초시청 회계과
- 연락처 : 전화(033-639-2273), 팩스(033-639-2396), 이메일(kmn0614@korea.kr)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을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16조에 따른 속초시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 담당부서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 ③ 위원은 속초시 예산·관광·건설도시·산림 업무 분야 담당과장과, 공유재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1호부터 2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⑨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⑩ 위원 본인이 제8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① 심의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심의회는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업무담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 3. 법 제12조에 따른 회계 간 무상이관

제5조제1항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
- 6.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무상 대부
- 7.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는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취득·처분에 관한 재심의(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가.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각 개별법령에 의한 사업인가 포함)시 취득·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

제5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공유재산은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를 “공유재산은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 제목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을 속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제12조제4항(중전의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의 작성은 총괄재산관리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중 “사용허가 하고자”를 “사용·수익 허가”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태만히”를 “게을리”로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 중 “불일치되어”를 “저촉되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단서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를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인구집중 유발시설을”로, “내로”를 “관할 구역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초지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재산대부료의 요율은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 (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최초년도”를 “첫째 연도” 하며, “2차년도”를 “2차 연도”로 한다.

제38조제1항제4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와”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한다.

제49조 중 “부시장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를 “부시장 또는

그 밖의 소속공무원이 사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 또는 임차”로 한다.

제50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의 요율 적용례) 제29조(대부료의 요율) 제5항의 신설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도래하는 재산 대부료 요율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이하"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6조에 따른 속초시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 담당부서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p> <p>③ 위원은 속초시 예산·관광·건설도시·산림 업무 분야 담당과장과, 공유재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1호부터 2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 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⑥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 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⑧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
였던 사람이 해당 단체의 임원이
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
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
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⑨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
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
청을 할 수 있다.

<신 설>

⑩ 위원 본인이 제8항의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
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신 설>

⑪ 심의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
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 설>

⑫ 심의회는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생 략)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업무담당으로 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
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
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3. 법 제12조에 따른 회계 간 무
상이관
4. (현행과 같음)
5.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
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
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
6.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무상
대부
7.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
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
하여 증감된 경우, 취득·처분에
관한 재심의(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

5. (생략)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산의 취득·처분

2.·3. (생략)

4.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 (각 개

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

1. 영

2.·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

가.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 (각 개별법령에 의한 사업인가 포함)시 취득·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

<삭제>

별법령에 의한 사업인가 포함)
시취득·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은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기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
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
산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
산의결 전까지 속초시의회(이하 "
시의회"라한다)에 제출하여 의결
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
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
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추가경정예
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시의회 의
결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8조(실태조사) ① -----
----- 공유재산은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
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
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시
장은 예산을 속초시의회(이하 "시
의회"라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
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
다)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
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
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
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의 작성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의 작성은 총괄재산관리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

-----.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에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재산에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 사용·수익 허가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

게을리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분의10 이상으로 한다.

1. ~ 4. (생략)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시 내로 이전하는 경우

6. (생략)

<신설>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 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한 날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④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5 .

-----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 관할 구역으로 -----

6. (현행과 같음)

⑤ 「초지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재산대부료의 요율은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 (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

----- 첫째 연도 -----

----- 2차 연도 -----

-----.

②·④ (현행과 같음)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 2. (생략)

<신설>

제50조(관사의 구분) -----
-----.

1. · 2. (현행과 같음)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 · 그 밖의
관사 등

<신설>

제50조의2(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허가한다. 다만, 1급 · 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속초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 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5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2. 개정이유

- 조례의 조문과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에 따른 조항 수정 및 조문의 띄어쓰기 수정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속초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안 제3조)
- 속초시 수돗물평가위원의 임기와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회의 및 의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정기검사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
(참조 :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24868 / 속초시 떡밭재로 181(조양동)

속초시 상수도사업소

(전화 : 033-639-2670, FAX : 033-639-2433)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상수도사업소 시험팀(033-639-267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속초시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속초시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평가 및 공표
2.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4. 그 밖의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 의회, 관련단체나 소비자가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수돗물 수요자
3.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4. 그 밖의 소비자보호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등의 관계자

제4조(임기와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거나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장기간(6개월 이상)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 중 관계공무원의 업무가 변경될 때
4.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할 때

②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소비자 등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돗물 평가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관련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속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속초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정기검사 및 자문) ①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수돗물의 정기검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결과 수돗물의 안전성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 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5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2. 개정이유

- 조례의 조문과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에 따른 조항 수정 및 조문의 띄어쓰기 수정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2조)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안 제12조)
- 사용자대표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 안 제19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 (참조 :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24868 / 속초시 떡밭재로 181(조양동)

속초시 상수도사업소

(전화 : 033-639-2670, FAX : 033-639-2433)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상수도사업소 시험팀(033-639-267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3. “소규모수도시설”이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총칭한 것을 말한다.
4.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대표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6. “사용자대표협의회”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및 법 제4조에 따른 속초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

제4조(시설의 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과 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 보호 등)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① 시장은 법 제29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로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규모수도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①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회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사항을 해당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건강진단) 시장은 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관리비용

제13조(요금징수) ① 시장은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상수도의 사용자에게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회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속초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4조(관리비용) ① 시장이 제13조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 간의 비용 분담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계량기) ①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 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계량기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시장이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제4장 사용자대표협의회

제16조(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 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 관리자를 포함한 5명 내외로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협회회의 대표자는 협회회의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대표자는 협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 ④ 협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 협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 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 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 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회의개최)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 2.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 3. 협회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협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협회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실비 보상) 시장은 협회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시장은 협회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 정기점검 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마을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협회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주소불명으로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09. 18.

속 초 시 장

1. 공고(의견제출)기간 : 2015. 09. 18. ~ 2015. 10. 02. (14일간)
2. 공고장소 : 속초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직권말소일 : 2015. 09. 16.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김삼수	
	주 소 (대장상주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3/4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의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위치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98-1번지
		건축물 현 황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지상1층 주택 23.14㎡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속초시 건축디자인과(☎033-639-27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